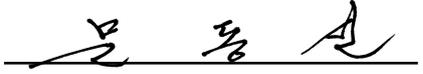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4월 30일

군산시 규칙 제 42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
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제15조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 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 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 성명	한 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자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관·과읍면동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 하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 2. 직 위 :
- 3. 직(계)급 :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 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과 읍면동 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근속연수의</u> <u>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u> <u>직예정일,</u> ----- ----- -----.</p>
<p>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p>	<p><u>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u> <u>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u> <u>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u> <u>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u> <u>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u>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 1호</u> <u>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 2호서식)을</u>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u>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u>----- -----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 질 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폐 질 등 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 산 지 급 배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 내지 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4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내지 8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3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급 내지 12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2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급 내지 1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1배</td> </tr> </tbody> </table>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p><삭 제 ></p>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p>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생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u>근속기간</u>,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u>재직기간</u>,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일을 기준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u>지체없이</u>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u>즉시</u>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u>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u>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 ----- -----<u>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u>----- ----- ----- ----- ----- ----- -----</p>
<p>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u>직(계·등)급</u>별 과원수에 따라 <u>직(계·등)급</u>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u>직(계·등)급</u>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u>직(계·등)급</u>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u>직(계)급</u>별 과원수에 따라 <u>직(계)급</u>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u>직(계)급</u>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u>직(계)급</u>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생략) 3. (생략) 	<p>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09-34호

임피면 보석리 남산천 소하천공사 편입부지 분할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도근점(20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163	273573.15	187660.16	임피.월하786-2	2009.4.6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164	273682.59	187529.02	임피.월하 산108-2	“	“
“	51165	273691.90	187435.95	임피.보석 산92-3	“	“
“	51166	273564.46	187239.00	임피.보석167-1	“	“
“	51167	273510.73	187094.90	임피.보석 산104-1	“	“
“	51168	273617.37	186976.22	임피.보석770-2	“	“
“	51169	273780.15	186928.3	임피.보석 산82-6	“	“
“	51170	273896.62	186831.98	임피.보석 산119-3	“	“
“	51171	274080.87	186750.67	임피.보석114-4	“	“
“	51172	274142.15	186662.92	임피.보석765-8	“	“
“	51173	274144.10	186538.20	임피.보석103-3	“	“
“	51174	274085.56	186445.98	임피.보석 산27-5	“	“
“	51175	274057.54	186212.89	임피.보석765-1	“	“
“	51176	274088.51	185925.07	임피.보석452-20	“	“
“	51177	274082.41	185638.80	임피.보석 산6-26	“	“
“	51178	274077.51	185454.71	임피.보석 산4-5	“	“
“	51179	274129.93	185333.56	임피.보석 산1-6	“	“
“	51180	274107.58	185127.3	임피.미원1037-13	“	“
“	51181	274307.69	184949.46	대야.보덕1143	“	“
“	51182	274293.56	184728.19	대야.보덕1155	“	“
		이	하	여	백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09-35호

나포면 장상리 군둔천 정비사업 및 회현 대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삼각보조점(4점)과 지적도근점(31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X(m)	Y(m)			
지적삼각보조점	보197	268139.16	176220.27	회현.대정606-34	2009.4.7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보198	266591.97	176255.54	회현.월연653	“	“
“	보199	266083.67	175568.39	회현.월연580	“	“
“	보200	267374.92	175522.68	옥구.이곡766-1	“	“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044	281977.31	187221.08	나포.장상831	2009.2.9	“
“	51045	281787.53	187059.68	나포.장상907	“	“
“	51046	281523.41	187076.71	나포.장상908	“	“
“	51047	281341.83	187078.01	나포.장상926	“	“
“	51048	281360.66	186803.40	나포.장상854	“	“
“	51049	281203.16	186711.69	나포.장상447-2	“	“
“	51050	280990.80	186603.60	나포.장상434--2	“	“
“	51051	280860.17	186720.40	나포.장상857	“	“
“	51052	280897.91	186899.74	나포.장상 산251-4	“	“

군산시 고시 제2009-36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4.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미룡동 556-5번지 일원 및 산북동 945-3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 원 (m)	연 장 (m)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소로2-746	8	1,360	8	1,260	10,080	
소 계						10,080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 원 (m)	연 장 (m)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삼양레미콘~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701호선	8	253	8	62	507	
	소로 2-702호선	8	257	8	8	296	
	소로 2-703호선	8	152	8	25	286	
	소로 2-704호선	8	100	8	96	852	
	소로 2-705호선	8	238	8	8	356	
	소로 3-429호선	6	129	6	116	810	
합 계	6개 노선	6~8	1,613	6~8	1,322	20,667	

3.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 2007. 12. 27 ~ 2010. 12. 31.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 2008. 12. ~ 2010.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미룡동	659-9	도	33	33	농수산부				
2	미룡동	663-2	유	43	43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3	미룡동	556-5	도	15	15	허철	군산시미룡동푸른원릉304			
4	미룡동	568-19	도	0.6	0.6	박승만	경기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15			
5	미룡동	568-19	도	0.4	0.4	박승방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 덕소강변홈타운101/801			
6	미룡동	573-4	대	83	83	강효식	회현면대정리166			
7	미룡동	577-46	전	59	59	이점례	군산시미룡동산북부향3차1118			
8	미룡동	658-2	전	9	9	박광래	서천장항읍성주리금강102/605			
9	미룡동	659-10	전	73	73	박광래	서천장항읍성주리금강102/605			
10	미룡동	663-3		16	16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11	미룡동	540-1	도	3	3	박길원				
12	미룡동	635-1	답	89	89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13	미룡동	642-4	도	11	11	서문영	군산시삼학동대우아파트101/403			
14	미룡동	644-3	도	122	122	홍공식외2				
15	미룡동	666-2	도	7	7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변홈타운101/801			
16	미룡동	666-3	답	63	6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변홈타운101/801			
17	미룡동	666-4	제방	30	30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변홈타운101/801			
18	미룡동	666-5	제방	33	3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변홈타운101/801			
19	미룡동	799-1	도	3	3	박계양	남양주시외부읍덕소리600덕소강변홈타운101/801			
20	미룡동	799-2	대	53	53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21	미룡동	802-1	도	36	36	문종구				
22	미룡동	801-1	도	23	23	홍선순				
23	미룡동	600-1	전	13	13	추상석	군산시미룡동601-1			
24	미룡동	601-2	대	17	17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25	미룡동	601-3	대	26	26	추상석	군산시미룡동601-1			
26	미룡동	602	대	5	5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27	미룡동	602-1	전	13	13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28	미룡동	802-12	답	20	20	강동환	군산시경암동671-17			
29	미룡동	572-1	도	10	10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0	미룡동	573-1	도	36	36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1	미룡동	577-44	전	26	26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2	미룡동	577-45	대	24	24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3	미룡동	578-2	도	23	23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4	미룡동	578-3	답	33	33	김종윤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5	미룡동	576-1	전	69	69	장세욱	경기화성시태안읍기산리248			
36	미룡동	595-10	대	4	4	홍순철	군산시미룡동595-2			
37	미룡동	583-3	전	65	65	한용희	고양시주엽동6문촌마을508/1504			
38	미룡동	583-4	전	22	22	한용희	고양시주엽동6문촌마을508/1504			
39	미룡동	656-3	임	38	38	한덕수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40	미룡동	584-3	전	18	18	김만자	군산시나운동345롯데109/906			
41	미룡동	800-2	답	8	8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2	미룡동	800-5	전	21	21	홍양성외1	군산시미룡동602			
	소계				1,29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43	미룡동	800-6	대	21	21	손영민	군포시대야미동496-4			
44	미룡동	800-15	대	2	2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5	미룡동	800-16	전	2	2	김점덕	군산시문화동898-16			
46	미룡동	579-2	도	46	46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47	미룡동	568-1	도	46	46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48	미룡동	579-4	답	114	114	이준복				
49	미룡동	572-3	전	25	25	차종선	성남시분당구금곡동143청솔마을703-1002			
50	미룡동	580-3	답	104	104	이영세	군산시개정면운회리304			
51	미룡동	577-47	대	33	33	서용석	군산시미룡동577-39			
52	미룡동	598-1	전	13	13	유영애	군산시조촌동758-2동산연립라동221호			
53	미룡동	802-11	대	30	30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4	미룡동	802-14	대	96	96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5	미룡동	802-2	도	194	194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6	미룡동	802-6	답	81	81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7	미룡동	802-8	답	49	49	박금득	군산시미룡동507-1			
58	미룡동	803	답	43	43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59	미룡동	588-3	전	27	27	김동규	군산시나운동100-11롯데202/401			
60	미룡동	593-6	전	11	11	김동규	군산시나운동100-11롯데202/401			
61	미룡동	540-4	답	5	5	김현숙	서울송파구가락동95가락동 부센트리빌103/2202			
62	미룡동	643-3	도	19	19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3	미룡동	654-2	전	58	58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4	미룡동	654-10	전	5	5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5	미룡동	654-11	전	7	7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66	미룡동	655-2	전	2	2	홍천의	군산시미룡동649			
67	미룡동	655-6	전	38	38	군산시	군산시조촌동조촌로8			
68	미룡동	594-3	도	128	128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69	미룡동	594-4	전	3	3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70	미룡동	595-1	전	9	9	최길택외1	군산시구암동333-1세풍아파트105/501			
71	미룡동	595-7	도	165	165	최영자	군산시명산동21-7			
72	미룡동	산58	임	84	84	한덕수외1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73	미룡동	656-3	임	38	38	김원준	서울동작구대방동502현대1 01/2201			
74	미룡동	571-4	대	5	5	김선희	군산시나운동155-5대우아파트101/1002			
75	미룡동	571-6	전	22	22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6	미룡동	571-7	전	90	90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7	미룡동	556-4	답	57	57	홍복성	군산시미룡동799-6			
78	미룡동	562-5	전	44	44	김이권	군산시미룡동563-1			
79	미룡동	596-5	대	38	38	박영수	군산시미룡동596-2			
80	미룡동	555-4	대	35	35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81	미룡동	834-38	대	4	4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82	미룡동	802-11	대	2.56	2.56	장현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0 우성아파트127/1105			
83	미룡동	575-4	답	30	30	박기수	군산시미룡동568-2			
84	미룡동	568-18	대	22	22	이신기	군산시평화동65-18			
	소계				1,847.5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85	미룡동	802-13	대	38	38	이순이	군산시미룡동802-5			
86	미룡동	573-5	도	3	3	강효식	군산시회현면대정리166			
87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안입주단지동1			
88	미룡동	660-18	전	4.54	4.54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안입주단지동1			
89	미룡동	660-19	전	0.3	0.3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안입주단지동1			
90	미룡동	660-20	전	13.63	13.63	오판옥	군산시수송동10-4경안입주단지동1			
91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심상근	군산시구암동364-1			
92	미룡동	660-18	전	4.54	4.54	심상근	군산시구암동364-1			
93	미룡동	660-19	전	0.3	0.3	심상근	군산시구암동364-1			
94	미룡동	660-20	전	42.72	42.72	심상근	군산시구암동364-1			
95	미룡동	660-17	전	24.24	24.24	김명부	군산시조촌동303-2현대아파트102/708			
96	미룡동	660-18	전	4.54	4.54	김명부	군산시조촌동303-2현대아파트102/708			
97	미룡동	660-19	전	0.3	0.3	김명부	군산시조촌동303-2현대아파트102/708			
98	미룡동	660-20	전	42.72	42.72	김명부	군산시조촌동303-2현대아파트102/708			
99	미룡동	597-3	대	44	44	김우성	수원시권선구서둔동371센 트라우스103/1303			
100	미룡동	552-1	도	17	17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1	미룡동	552-2	전	12	12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2	미룡동	554-1	도	13	13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3	미룡동	554-2	대	81	81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4	미룡동	555-1	도	43	43	임정남	군산시미룡동555-2			
105	미룡동	556-1	도	66	66	홍동식	군산시나운동금호타운101/201			
106	미룡동	416-18	대	57.4	57.4	박중예순	군산시미룡동주공3차304/501			
107	미룡동	661-1	도	361	361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08	미룡동	668-18	도	725	72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09	미룡동	641-1	도	11	11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0	미룡동	646-1	도	10	10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1	미룡동	656	전	17	17	한덕수	군산시나운동155-6롯데303/1001			
112	미룡동	656-1	도	493	49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3	미룡동	659-8	도	34	34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4	미룡동	660-1	도	33	3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5	미룡동	660-2	도	72	72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6	미룡동	660-3	도	45	4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7	미룡동	660-4	도	63	6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8	미룡동	660-5	도	165	165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19	미룡동	660-6	도	454	454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0	미룡동	660-12	도	43	43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1	미룡동	660-13	도	82	82	군산대학교	군산시대학로1170			
122	미룡동	660-1	도	3.27	3.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3	미룡동	660-2	도	7.18	7.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4	미룡동	660-3	도	4.54	4.54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5	미룡동	660-4	도	6.27	6.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6	미룡동	660-5	도	16.54	16.54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소계				3,206.51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27	미룡동	660-6	도	45.36	45.36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8	미룡동	660-12	도	4.27	4.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29	미룡동	660-13	도	8.18	8.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0	미룡동	660-17	전	7.27	7.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1	미룡동	660-18	전	1.36	1.36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2	미룡동	660-19	전	0.09	0.09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3	미룡동	660-20	전	4.09	4.09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4	미룡동	660-7	전	5.27	5.27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5	미룡동	660-8	전	4.63	4.63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6	미룡동	660-9	전	3.18	3.18	박경수	인천중구신흥동3가7-235신흥아파트107/1905			
137	미룡동	562-6	도	7	7	김이권	군산시산북동3620-8			
138	미룡동	643-4	도	17	17	서문영	군산시삼학동811대우아파트101/403			
139	미룡동	801-6	답	20	20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140	미룡동	801-2	도	281	281	고운영	군산시월명동4-7			
	소계				408.7					
	합계				6758.7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미룡동		펌프장		3.84m2	군산시				
2	미룡동	568-4	가옥		64.96m2	이신기	군산시평화동65-18			
3	미룡동	595-9	가옥		69.0m2	홍순철	군산시미룡동595-2			
4	미룡동	596-2	가옥		79.5m2	박영수	군산시미룡동596-2			
			화장실		1.5m2					
			담장		6.4m2					
5	미룡동	597-1	가옥		60.75m2	손춘자	군산시미룡동597-1			
			화장실		5.75m2					
			담장		16.5m2					
6	미룡동	800-5	담장		27.75m2	홍양성	군산시미룡동602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삼양레이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산북동	945-3	전	34	34	군산시			
2		946-5	전	341	341	"			
3		947-6	전	103	103	"			
4		922-139	임	9	9	군산시외1인 (김귀식)	옥서면 선연리 33	축협,농협	가압류
5		922-140	대	284	284	군산시			
6		922-142	대	145	145	군산시외1인 (김귀식)	옥서면 선연리 33	축협,농협 수산업,새마을금고	가압류
7		922-144	전	52	52	"	"	"	가압류
8		922-146	전	236	236	국(재정경제원)			
9		922-152	전	30	30	군산시			
10		922-149	도	176	176	국(재정경제원)			
11		922-151	전	61	61	"			
12		922-148	전	18	18	군산시			
13		922-96	도	10	5	국(재정경제원)			
14		922-103	도	311	4	"			
15		922-47	도	393	21	"			
16		922-163	대	40	40	"			
17		922-162	전	190	190	국(재무부)			
18		922-156	전	134	134	군산시			
19		922-165	전	156	156	국(재무부)		김영식	임대
20		922-154	전	139	139	군산시			
21		922-158	임	451	451	"			
22		922-160	전	148	148	"			
23		852-1	대	37	37	"			
24		853-3	대	293	293	군산시외1인	산북동 갈마경노원외1인		
		합계	24필	3,791	3,10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삼양레이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922-140	대	건물	스레트	24.38㎡			
2		922-141	대	건물	스레트	12.53㎡			
3		922-140	대	담장	블럭	23.12㎡			
4		922-141	대	담장	블럭	7.42㎡			
5		922-140	대	나무	향나무	5주			
6		922-146	전	건물	스레트	60.76㎡			
7		922-146	전	담장	블럭	19.20㎡			
8		922-146	전	나무	향나무	1주			
9		922-146	전	나무	감나무	1주			
10		922-151	전	건물	스레트	46.12㎡			
11		922-46	전	건물	스레트	5.60㎡			
12		922-151	전	나무	살구나무	1주			
13		922-151	전	나무	대추나무	3주			

군산시 고시 제2009 -37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4.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신평동 909-85번지 일원 및 옥구읍 선제리 132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신평동월명@~ 군산중간도로개설	소로 3-78	6	-	6	140	1,020	
소 계						1,020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소로1-181	10	1,575	10	831	8,493	
소 계						8,493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신평동 월명A~군산중간 도로개설 : 2009. 4. ~ 2011. 12. 31.
 -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 2009. 4. ~ 2011.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신풍동 월명A~군산중간 도로개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송풍동	921-39	전	담장	조립식	5칸	이판석	송풍동 921-39			
		"	"	담장		4m					
		"	"	장독대		1식					
		"	"	화장실	블록스레트	2.6m2					
		"	"	대문	철재	1식					
		"	"	수도계량기		1식					
		"	"	마당포장		1식					
		"	"	나무	옥향	2주					
		"	"	나무	목련	1주					
		"	"	나무	개나리	3m					
		"	"	나무	석류및철재	1식					
		"	"	정화조	정화조	1식					
		"	"	주택(1F)	조적조슬라브	65.3m2					신규
		"	"	주택(2F)	조적조슬라브	38.4m2					신규
		"	"	화장실	슬라브	3.0m2					신규
		"	"	까대기	함석스레트	6.3m2					신규
		"	"	담장	블록	25m					신규
2	송풍동	921-37	대	담장	블록	10.3m					신규
		"	"	마당포장	콘크리트	24.7m2					신규
		"	"	까대기	40	16.1m2					신규
3	송풍동	921-36	대	화장실	적벽돌스라브	1.44m2	주응기				
		"	"	대문	철재	1식					
		"	"	담장	블록	11m					
		"	"	마당포장		1식					
		"	"	돌계단		1식					
		"	"	나무	포도나무	1주					
4	송풍동	921-6	대	주택	블럭스레트	32.5m2	유춘식				
		"	"	건물	블럭스레트	10.5m2					
		"	"	주택	블럭스레트	20.16m2					
		"	"	나무	은행나무	1주					
		"	"	나무	골단초	1주					
		"	"	나무	매화	1주					
		"	"	나무	장미	2주					
		"	"	나무	감나무	1주					
		"	"	나무	석류나무	1주					
		"	"	화단		2식					
		"	"	나무	기타수목	1주					
		"	"	대문	철재	1식					
		"	"	담장	블록	5m					
		"	"	담장	조립식	14m					
		"	"	마당포장		1식					
		"	"	주택	블록 기와	68.7m2					신규
		"	"	창고	블럭스레트	15.3m2					신규
		"	"	담장	블록	36.4m					신규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신풍동 월명A~군산중간 도로개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5	송풍동	921-65	대	주택	블록 기와	57.1m2	군산시				신규					
				창고	블럭스레트	3.3m2					신규					
				창고	블럭스레트	2.3m2					신규					
				창고	블럭스레트	16.8m2					신규					
				화장실	블럭스레트	1.5m2					신규					
				까대기	스레트	9.1m2					신규					
				담장	블록	28m					신규					
			마당포장	콘크리트	86.1m2					신규						
6	신풍동	909-12	대	다용도실	블럭스레트	8m2										
				창고	블럭스레트	12m2										
				주택	블록 기와	56.6m2							신규			
				주택	블록 기와	31.0m2							신규			
				화장실	블럭스레트	3.5m2							신규			
				화장실	블럭스레트	5.6m2							신규			
				마당포장	콘크리트	62.8m2							신규			
			담장	블록	19m					신규						
7	신풍동	909-11	대	주택	블록 기와	59.2m2	김상운					신규				
				창고	슬라브	15.6m2						신규				
				창고	슬라브	7.6m2						신규				
				화장실	슬라브	5.6m2						신규				
				마당포장	콘크리트	46.5m2						신규				
			담장	블록	30.4m					신규						
8	신풍동	909-42	대	주택	벽돌 스투트	41.4m2	이흥근					신규				
				주택	블럭스레트	21.0m2										
				수도계량기		1식										
				마당포장		1식										
				까대기		1식										
				주택	조적 슬라브	81.7m2										신규
				화장실	블럭스레트	0.9m2										신규
			계단	콘크리트	1식	신규										
			담장	블록	22.4m	신규										
9	신풍동	909-57	대	주택및목욕탕	블럭칼라시트	22.5m2	박철									
				장독대	콘크리트	1식										
				나무	무화과	1주										
				나무	강나무	1주										
				주택	블록 함스	82.9m2										신규
				까대기	함석스레트	12.2m2										신규
				까대기	함석스레트	10.0m2										신규
마당포장	콘크리트	65.6m2	신규													
			담장	블록	12.3m	신규										
10	신풍동	909-32	대	주택	블럭스레트	16.5m2	군산시									
				창고및화장실	블럭스레트	8.0m2										
				주택	블럭스레트	16.5m2								신규		
				까대기	스레트	7.1m2								신규		
				까대기	스레트	5.5m2								신규		
마당포장	콘크리트	63.8m2	신규													
			담장	블록	16.0m	신규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1	옥구읍 선제리	138-7	대	190	5	농촌공사	익산시 평화동 56			
2	옥구읍 선제리	796-1	도	15,951	133	국(건설부)				
3	옥구읍 선제리	132	전	274	251	군산시				
4	옥구읍 선제리	131-2	대	32	32	"				
5	옥구읍 선제리	123-5	전	274	274	"				
6	옥구읍 선제리	139-21	임	272	272	국(재무부)				
7	옥구읍 선제리	139-19	전	167	167	"				
8	옥구읍 선제리	108-15	임	567	567	"				
9	옥구읍 선제리	108-17	임	605	605	"				
10	옥구읍 선제리	108-19	임	55	55	"				
11	옥구읍 선제리	387-4	전	44	44	"				
12	옥구읍 선제리	392-1	전	193	193	"				
13	옥구읍 선제리	389-5	대	72	72	"				
14	옥구읍 선제리	391-4	대	229	229	"				
15	옥구읍 선제리	395-3	대	65	65	"				
16	옥구읍 선제리	391-6	도	1	1	"				
17	옥구읍 선제리	395-4	도	31	31	"				
18	옥구읍 선제리	397-3	전	176	176	"				
19	옥구읍 선제리	397-2	도	17	7	"				
20	옥구읍 선제리	398-1	대	1	1	정태섭	옥구읍 선제리 49			
21	옥구읍 선제리	396-2	도	255	1	군산시				
22	옥구읍 선제리	396-5	대	26	26	전재호	옥구읍 선제리 361			
23	옥구읍 선제리	399-4	전	328	328	군산시				
24	옥구읍 선제리	399-5	전	126	126	"				
25	옥구읍 선제리	368-1	대	118	118	"				
26	옥구읍 선제리	364-1	전	18	18	"				
27	옥구읍 선제리	365-3	전	386	386	"				
28	옥구읍 선제리	363-10	전	504	504	"				
29	옥구읍 선제리	412-3	전	229	229	"				
30	옥구읍 선제리	413-6	대	111	111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31	옥구읍	411-43	전	32	32	군산시				
32	옥구읍	413-8	전	54	54	"				
33	옥구읍	411-28	도	12	12	군산시				
34	옥구읍	411-29	전	222	222	"				
35	옥구읍	411-38	전	241	241	"				
36	옥구읍	411-31	도	25	25	"				
37	옥구읍	411-41	도	33	33	"				
38	옥구읍	411-37	전	27	27	"				
39	옥구읍	411-33	도	17	17	"				
40	옥구읍	411-22	도	152	152	"				
41	옥구읍	411-35	전	88	88	"				
42	옥구읍	411-40	대	19	19	"				
43	옥구읍	418-8	대	182	182	"				
44	옥구읍	417-9	도	86	86	"				
45	옥구읍	418-10	도	2	2	국(국세청)				
46	옥구읍	417-17	전	140	140	군산시				
47	옥구읍	417-19	전	2	2	"				
48	옥구읍	416-7	전	108	108	"				
49	옥구읍	415-1	전	312	312	"				
50	옥구읍	416-9	전	90	90	"				
51	옥구읍	414-4	답	286	286	"				
52	옥구읍	469-16	임	4	4	"				
53	옥구읍	686-1	전	86	86	"				
54	옥구읍	687-7	답	94	94	"				
55	옥구읍	687-8	답	552	192	"				
56	옥구읍	686-2	전	174	174	"				
57	옥구읍	687-9	답	127	49	"				
58	옥구읍	469-17	임	73	73	군산시외1인				
59	옥구읍	682-17	답	116	116	김길수외1인(군산시)				
60	옥구읍	685-6	전	548	548	군산시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관리 내용
1	옥구읍 선제리	132	전	건물	조립식판넬	19.20㎡				
2	옥구읍 선제리	132	전	건물	조립식판넬	20.40㎡				
3	옥구읍 선제리	132	전	담장	블럭	41.99㎡				
4	옥구읍 선제리	131-2	대	건물	스레트	0.35㎡				
5	옥구읍 선제리	131-2	대	담장	블럭	16.4㎡				
6	옥구읍 선제리	395-3	대	건물	스레트	23.60㎡				
7	옥구읍 선제리	395-3	대	담장	블럭	1.32㎡				
8	옥구읍 선제리	395-3	대	대문	철재	1EA				
9	옥구읍 선제리	399-4	전	담장	블럭	6.96㎡				
10	옥구읍 선제리	396-3	대	건물	스레트	2.84㎡				

군산시 고시 제2009-38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4 .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286-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면적	면적	
도시근린공원	교양시설 (예술회관)	139,157㎡	51,056㎡	
소 계				

3.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문화체육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9. 06. ~ 2012.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1493-32	도	79	79	농림수산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2	지곡동	271-2	대	136	136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	지곡동	271-5	전	186	186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4	지곡동	275-1	답	915	91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5	지곡동	275-2	답	2,406	2,406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6	지곡동	275-4	답	222	22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7	지곡동	276-1	전	277	277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8	지곡동	277-1	답	1,385	1,38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9	지곡동	278	답	1,762	1,76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0	지곡동	279	답	982	98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1	지곡동	280	답	2,460	2,460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2	지곡동	281	대	185	18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3	지곡동	282	답	1,851	1,851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4	지곡동	283	답	621	621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5	지곡동	284	답	2,192	2,19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6	지곡동	284-1	답	549	549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7	지곡동	284-2	전	1,140	1,140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8	지곡동	284-3	전	175	17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9	지곡동	285	전	595	59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0	지곡동	285-2	전	274	274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1	지곡동	285-4	유	1,355	1,355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22	지곡동	285-5	전	711	711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3	지곡동	285-16	전	417	417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4	지곡동	285-17	대	582	58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5	지곡동	285-18	전	140	140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6	지곡동	285-20	전	360	360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7	지곡동	285-21	전	395	395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28	지곡동	285-22	답	238	238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9	지곡동	285-35	도	7	7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0	지곡동	285-36	도	12	12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1	지곡동	285-45	도	17	17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2	지곡동	285-46	도	224	224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3	지곡동	285-47	전	1,364	1,364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4	지곡동	285-48	전	79	79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5	지곡동	285-49	도	352	352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6	지곡동	285-50	도	142	142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7	지곡동	285-51	도	801	801	국토해양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38	지곡동	285-52	임	259	259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9	지곡동	286-4	전	15	15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4
						최귀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567				1/4(수용)
40	지곡동	286-6	임	416	416	이왕연	군산시 나운동 803-2	문행찬	군산시 나운동527	근저당	수용
								고병탁	군산시미룡동213	근저당	
41	지곡동	286-8	전	5,422	5,42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4
						최귀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567				1/4(수용)
42	지곡동	286-9	전	277	277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43	지곡동	286-10	임	5,859	5,859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44	지곡동	286-11	임	891	891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45	지곡동	286-12	전	2,316	2,316	이상덕	군산시 수송동 69-2				1/4(수용)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3/4
46	지곡동	286-13	임	1,910	1,910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47	지곡동	288	묘	824	824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48	지곡동	288-1	묘	51	51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49	지곡동	288-2	묘	77	77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50	지곡동	483-2	도	80	80	농림수산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51	지곡동	286	전	1,864	1,864	이상덕	군산시 수송동				1/4(수용)
						최귀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567				1/4(수용)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2
52	지곡동	286-14	전	760	760	이상덕	군산시 수송동 69-2	김미경	군산시문화동26	피보전 권리 약정금	1/4(수용)
						최귀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567				1/4(수용)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1/2
53	지곡동	286-5	임	4,341	4,341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54	지곡동	287	대	95	95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55	지곡동	287-1	대	11	11	기획재정부	과천시 관문로 88				무상귀속

군산시 고시 제2009-39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4.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미룡동 612-19번지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612-19번지외 5필지	29,117	612-19번지외 5필지	29,117	
소 계					29,117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나운동 롯데4차@ 303/1001호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나라골프연습장 대표 한덕수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9. 4. ~ 2011. 4.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단 위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권리 내용	
1	군산시	-	미룡동	612-19	임야	1,282	432	나운동 155-10	강 기 환			
2	"	-	"	656-2	임야	7,344	7,344	서울동작구 대방동 502	김원준(½)			
								나운동 155-6	한덕수(½)			
3	"	-	"	산57-2	임야	7,240	7,240	나운동 155-6	한 덕 수			
4	"	-	"	산59-1	임야	12,397	12,397	나운동 155-6	한 덕 수			
5	"	-	"	656	전	1,000	1,000	나운동 155-6	한 덕 수			
6	"	-	"	657	전	704	704	나운동 155-6	한 덕 수			
계				6필지		29,967	29,117					

군산시 고시 제2009-40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80	6	국지 도로	160	구암동327-1 소1-110	구암동371 소3-278	일반 도로	-	전북 고135 (78.5.22)	
변경	소로	2	794	8	국지 도로	160	구암동327-1 소1-110	구암동371 소3-278	일반 도로	-		폭원확장

2.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서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09 - 41호

지방세 전자송달용 지방세정보통신망 고시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4. 27.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위택스(WeTax)로 한다.
- 위택스 인터넷주소 : www.wetax.go.kr

군산시 공고 제2009 - 803호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1.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 나. 개별주택수 : 23,668호(해망동 990-40번지의외 23,667호)
-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라. 열람안내 : 시청 세무과(2층) 및 군산시홈페이지(www.gunsan.go.kr)

2.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 2009. 4. 30 ~ 6. 1
-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제출장소 : 각읍·면·동사무소(민원실) 및 시청 세무과(2층)
-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각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450 - 6155, 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85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군 산 시 장

- 1. 공인신조 사유 : 인증기 구입에 따른 신조
- 2. 공인등록 연월일 : 2009. 4. 27.
- 4.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09. 4.
- 5. 등록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경암동	군산시경암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공고 제2009-866호

노선 인정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군 산 시 장

① 종류	② 노선명	③ 노선 번호	④ 기점	⑤ 종점	⑥ 총연장 km	⑦ 중요경 과지	⑧ 전 용 구 간 연 장 km	⑨ 중 용 구 간 연 장 km	⑩ 비고
군도	임피~ 서수선	군산시 군도 제18호	임피면 축산리 176-4	서수면 마룡리 938	5.1	서수면 농공단지	5.1		구, 지방도 711호 폐지 노선 전북도 승인 (09.4.27)

군산시 공고 제2009-872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군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4. 30.

군 산 시 장

(단위 : 명)

내 국 인			재외 국민수	외국인 영주체류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내국인+재외 국민+외국인)	투표청구 서명인 수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B)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 (A-B)				
203,314	1,055	202,259	146	80	202,485	18,400 (청구권자 총수의 1/11)

군산시 공고 제2009-849호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읍면동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위임사무명에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업무 신설(안 제2조 별표2)

4. 참 고 사 항

가. 법적근거·절차

-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나. 행 정 절 차

- ▶ 기 존 : 신청(읍면동) ⇒ 팩스 ⇒ 시청발급 ⇒ 팩스 ⇒ 교부(읍면동)
 - 민원처리 : 보통 1시간(법정기한 3시간)
- ▶ 개 정 : 신청(읍면동) ⇒ 교부(읍면동)
 - 민원처리 : 즉시 발급

※ 읍면동 건축물대장 발급건수 : 5,040건(2008년)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0-4263 ,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담당자 고성진(전화 063-450-41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고, 주택과란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란에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 근거 및 적용 법률란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관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소관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무과	1 ~ 5	(생략)			세무과	1 ~ 5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복지과	1 ~ 8	(생략)			복지과	1 ~ 8	(현행과 같음)		
청소과	1	(생략)			청소과	1	(현행과 같음)		
농정과	1 ~ 3	(생략)			농정과	1 ~ 3	(현행과 같음)		
주택과	1 ~ 2	(생략)			<u>건축과</u>	1 ~ 2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 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신설>					3			

군산시 공고 제2009-87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표준안)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등 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안제2조 별표1】
 -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 ※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기준을 1단계 이상 강화
 - ▶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비밀누설유출 경우 징계 강화

- '강등' 징계를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 ◊ 【안제2조 별표1 및 안제4조 별표3】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 ◊ 【안제2조 별표1의2】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안제2조의 2】
 - ▶ 협의없음·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 ▶ 공소권 없음·기소중지결장참고인증지결정 :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결
 - ▶ 기소유예 결정·공소제기 결정 : 징계의결
-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 ◊ 【안제2조 별표1의 3】
 - ▶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 신설 : 경징계
 - ▶ 음주측정불응(거부)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 ▶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면허정지시 중징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를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u> 나. <u>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u>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u>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u>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u>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u> 나. <u>무단결근</u>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u>비밀의 누설·유출</u>	<u>파면</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나. <u>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u>	<u>감봉-견책</u>
다. <u>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라. <u>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마. <u>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6. 청렴의무 위반	<u>파면</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u>파면</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나. 성폭력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다. 성희롱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u>견책</u>
라. 기타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u>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u>		<u>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u>		<u>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u>	
	<u>수동</u>	<u>능동</u>	<u>수동</u>	<u>능동</u>	<u>수동</u>	<u>능동</u>
<u>100만원 미만</u>	<u>경징계</u>	<u>경징계</u>	<u>경징계</u>	<u>중징계</u>		
<u>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u>경징계· 중징계</u>	<u>중징계</u>	<u>중징계</u>		<u>중징계</u>	
<u>300만원 이상</u>	<u>중징계</u>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	<u>경징계</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u> - <u>면허정지 : 중징계</u> - <u>면허취소 : 직권면직</u>
			5. <u>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u>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u>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 1의 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 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u>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u>뇌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 2와 별표 1의 3을 각각 적용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7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현행	개정안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4.(생략)</p> <p>② (생략)</p>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 자는 <u>징계위원회</u>가 징계사건을 의 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 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 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의 소행, 근무성적, <u>개전의 정</u>, 기 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 권자는 <u>인사위원회</u>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 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 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 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 소의 소행, 근무성적, <u>뇌우치는 정 도</u>,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해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 책
성폭력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신설2005.06.30>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개정2005.06.30>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u>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u>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u>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u>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u>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u>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u>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u>무단결근</u>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u>비밀의 누설·유출</u>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u>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u>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u>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u>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u>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u>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u>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u>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신설2005.06.30>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수수행위 비위유형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수사·조사·단속 등의 상황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 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 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이 나 향응 등을 수수하되 위법 ·부당한 처 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현행		개정안																																																			
<p>[별표 1의3] <신설2009.04.15></p> <p style="text-align: center;">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유형별</th> <th style="width: 20%;">처리기준</th> <th style="width: 6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면허정지(최초)</td> <td>경 고</td> <td rowspan="4">○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 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td> <td rowspan="3">경징계 의결요구</td> </tr> <tr> <td>면허취소(최초)</td> </tr> <tr> <td>단순 음주운전(2회)</td> </tr> <tr> <td>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td> <td rowspan="3">중징계 의결요구</td> <td>○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td> </tr> <tr> <td>단순 음주운전(3회이상)</td> <td>○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 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td> </tr> <tr> <td>면허취소(2회이상)</td> <td>○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td> </tr> <tr> <td>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td> <td rowspan="3">중징계 의결요구</td> <td rowspan="3">○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td> </tr> </tbody> </table>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 에 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 됨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 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면허취소(2회이상)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중징계 의결요구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p>[별표 1의3]</p> <p style="text-align: center;">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유형별</th> <th style="width: 20%;">처리기준</th> <th style="width: 6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 <td>단순 음주운전</td> <td>경 고</td> <td rowspan="2">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td> </tr> <tr> <td><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td> <td>경징계</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 <td rowspan="4">경징계</td> <td rowspan="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 <td>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td> <td rowspan="3">중징계</td> <td rowspan="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td> <td>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란 <u>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를 포함한다.</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td> </tr> <tr> <td><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td> <td rowspan="3">중징계</td> <td rowspan="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td> <td>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u>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td> </tr> <tr> <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 </tr> </tbody> </table>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 란 <u>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 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u>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 에 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 됨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 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면허취소(2회이상)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중징계 의결요구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 란 <u>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u> 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u>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u>징계양정감정기준</u> (제4조 관계)</p>		<p>[별표 3] <u>징계의 감정기준(제4조 관계)</u></p>	
<p>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p>	<p>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p>	<p>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p>	<p>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p>
<p>과 해 정 감 견</p>	<p>면 임 직 봉 책</p>	<p>해 정 감 견 불 문 (경 고)</p>	<p>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고)</p>

군산시 공고 제2009 - 871호

공 고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지방세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변경
-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4255,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전화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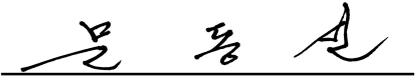
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	세표준은 법 제 187조의 규정에
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	준은 법 제 111조의 제 2항의 규	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의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91조(세율)	-----	
1,000분의 1.5로 한다.		1,000분의 1.4-----.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4월 30일

군산시 예규 제 18호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외 부분 중 ““직무관련자”라 함은”을 ““직무관련자”란”으로 “사인”을 “사인(私人)”으로 “이를 개인으로”를 “개인으로”로 하고, 같은 호가목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신청중에 있거나”를 “신청하는 중이거나”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로, 같은 호다목 중 “감사”를 “감사(監査)로, 같은 호라목 중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正), 감정(鑑定), 시험, 사정, 조정, 중재”로 “직접 이익”을 “직접적인 이익”이라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을 ““직무

관련공무원”이란”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로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를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이를”을 “사무를”로 하며, 같은 호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를 “시장이”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거래의 관행과”를 “거래관행과”로, “현저하게”를 “현저히”로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규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 등”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로 “현저히 저해하는”을 “현저하게 해치는”으로 “한 경우에는”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당해”를 “그”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로 “계속”을 “반복”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로 “상담을”을 “상담 요청을”로 “즉시 지시내용의 위법·부당여부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을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을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를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로 “상급자에 대하여는”을 “상급자에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당

해”를 “해당”으로 “판단되는”을 “판단되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학연”을 “학연·종교”로 “주어서는 아닌된다”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공무활동”을 “공무 활동”으로 “목적외의”를 “목적 외의”로 “사용함으로써”을 “사용하여”로 “재정상”을 “재산상”으로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치인 또는”을 “정치인이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에 관하여”를 “인사에”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하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직위를”을 “직위를 직접”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직무수행 중”으로 “유가증권·부동산”을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과”를 “제1항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반인 등에게 공개되는”을 “일반인에게 공개된”으로 “공개될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적용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조 중 “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을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부동산·선물”을 “금전, 부동산, 선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본문 중 “자 또는”을 “자나”로 “자로부터

터”를 “사람으로부터”로 “그 당시의”를 “당시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4항 중 “존·비속”을 “존속·비속”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등의”를 “회의 등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로 “외부강의”를 “외부강의·회의”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차용금지”를 “차용 금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

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를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로 “차용하거나”를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로 “거래의 관행과”를 “거래관행과”로 “현저히”를 “현저하게”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본문의 규정에도”를 “본문에도”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로 “대여받고자 하는”을 “대여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무관련자 또는”을 “직무관련자나”로 “통지하여서는”을 “알려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조금품등”을 “경조금품 등”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친족간에”를 “친족 간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등이”를 “등에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위반여부”를 “위반 여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면서”로 “위반여부가”를 “위반하는 지가”로 “아니한 경우에는”을 “아니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신고와 확인”을 “신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알게 된 때에는”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적시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공무원을 징계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로 “제공받은”을 “받은”으로 “부분 또는”을 “부분이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그”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강령의”를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 강령의”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공무원행동강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강령은 <u>부패방지법</u>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군산시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직무관련자</u>"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u>사인</u>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u>개인</u>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u>』 제2조제2항제1호 및 <u>제4호의 규정</u>에 의한 민원사무를 <u>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u></p> <p>나. <u>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u></p> <p>다. <u>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u></p> <p>라. <u>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u> 등으로 <u>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u></p> <p>마.~사.(생략)</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p> <p>제2조(정의) -----.</p> <p>1. "<u>직무관련자</u>"란 ----- -----(<u>사인(私人)</u>)----- ----- <u>개인</u>으로 -----.</p> <p>가. ----- -----<u>제4호에 따른 신청하는 종이거나</u> -----</p> <p>나. ----- -----<u>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u> -----</p> <p>다. <u>감사(監査)</u>-----.</p> <p>라. <u>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사정(査定), 조정, 중재</u> ----- <u>직접적인 이익</u> -----</p> <p>마.~사. (<u>현행과 동일</u>)</p> <p>아. <u>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u>-----</p>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생략)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법규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

가.~나. (현행과 동일)

다. ----- 사무를-----

라. ----- 시장이 -----

3.----- 거래관행과 ----- 현저히 -----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

4. (현행과 동일)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동일)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 현저히 해치는 ----- 하였을 때에는 ----- 그 -----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지시내용의 위법·부당여부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생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 반복될 -----
 ---- 행동강령책임관 -----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
 -----.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
 -----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

 -----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
 ----- 상급자에게는 -----.

⑤ (현행과 동일)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

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재정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군산시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목적 외의 ---- 사용하여 ----
-- 재산상 ----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정치인이나 -----

-----.

②제1항에 따라 -----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 인사에
----- 인사업무 담당자-----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직위를 직접 -----
----- 해서는 ---
---- .

(삭제)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
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되어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지적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당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이후 2년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적용한다.

③(생략)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해치는
----- 해서는 -----.

②-----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
-----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직무수행 중
-----유가증권,부동산 -----

-----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

----- 일반인에게 공개된 -----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동일)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항공기 등 공용물
-----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생략)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교통·환경·위생·소방·건설업무 등
의 지도·단속 담당공무원과 인·허가민
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3.~4. (생략)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
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
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생략)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
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9. (생략)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
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금전, 부동산,
선물 -----
----- 아니 된다. -----, -----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
-----.

- 1. (현행과 동일)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
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4. (현행과 동일)
- 5. ----- 등으로 -----

- 6. (현행과 동일)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9. (현행과 같음)

③----- 자나
-----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존속·비속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

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15조(---- 회의 등의 --)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
--외부강의·회의 -----

--.

③ (삭제)

제16조(--- 차용 금지 --) ① -----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

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생략) 한 통지
-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4. 군산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거래관행과 ----- 현저하게 -----, -----아니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본문에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 대여 받으려는 -----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직무관련자나 -----알려서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2.(현행과 같음)
-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경조금품 등 -----아니 된다.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는 제외한다.

- 1. ----- 친족 간에 -----
- 2. -----등에서 -----

3.(생략)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 이 소속된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3. (현행과 동일)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 ----) ①----- --
--- 수행하면서 ----- 위반하는
지가 ----- 아니할 때에는 -----
-----.

② (현행과 동일)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 알게
되었을 때에는 -----
----- 국민권익위
원회 ----- .

②제1항에 따라 -----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

-----.

④-----제1항에 따라
-----해
당 -----
-----.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을
징계하는 -----.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①-----
--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
----- 받은 -----

